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8819 제3자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6. 4. 12.
판 결 선 고	2016.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3030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2.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41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9.자로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원,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소30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가 2014. 12. 25.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 D, E는 이 법원 2015노단8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나. 망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 D, E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는 4,285,714원, D, E는 각 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15가소3030호, 이하 '관련 사건' 내지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2015. 7. 27.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관련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2. 15.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하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1채권', '이 사건 2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0683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1채권의 예금계약(채무자 : 원주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전 모두 해지되어 그 잔액이 0원인 상태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제3자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이미 예금계약이 해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하여도 추심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니(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1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6호증의 1 내지 8, 갑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이 사건 2채권은 그 예금주가 원고로서 망 C의 상속재산이 혼입된 흔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상속재산이 아닌 원



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2채권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망 C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일반재산(고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도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

나) 망 C의 사망 이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원고는 한정승인당시 이를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하자 있는 한정승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관련 판결에 따른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민법 제1028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 중 권리에 한정되는 것으로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채권이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상,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2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



다.

나) 피고의 위 나)주장은, 원고가 상속재산(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임의 제한 없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선택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 채권에 대해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채권(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리·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주문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명시되므로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대한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다3197 판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주장과 같은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한정승인을 인정하여 확정된 관련 판결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 있는 한정승인이라며 그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5-10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과 아울러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강제집행금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새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0

별지 예금채권 목록 (별지 목록 삭제)